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5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어기구 · 윤준병 · 임호선
주철현 · 이병진 · 문금주
문대림 · 이원택 · 서삼석
임미애 · 송옥주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자, 산지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자, 산지경매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 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자,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및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 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자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6.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호·제3호·제4호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 ----- -----.
1. <u>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u>	<u><삭 제></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u>	<u><삭 제></u>
4. <u>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한 자</u>	<u><삭 제></u>
7. <u>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u>	<u><삭 제></u>
8. <u>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u>	<u><삭 제></u>
9. <u>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u>	<u><삭 제></u>

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

10. · 11. (생 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 11.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
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
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
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
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
를 거부·기피한 자

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
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6.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
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
래를 한 자

7.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

<u>1.</u> ~ <u>4.</u> (생략) ② · ③ (생략)	<u>니한 자</u> <u>8.</u> ~ <u>11.</u>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